

##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 확정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이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7. 12(목)의 결되었다.

동 개정(안)은 7. 16.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어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시행령은 출자총액 제한 완화에 대한 정부·재계간 합의내용과 기업집단으로부터의 계열제외 요건 추가신설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업양도에 의한 주식취득을 예외인정 대상에 포함하고, 합병예정 주식취득의 예외인정기간 기산일을 다른 구조조정관련 출자와 동일하게 2001. 4. 1.로 변경함으로써 예외인정기

간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며, 신규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출자를 예외인정 대상에 포함하고, 구조조정을 위한 증여주식 취득을 예외인정 대상에 포함하면서 그 기간은 2년으로 하는 등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근본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범위를 보완하고, 둘째, 경영정상화가 추진중인 기업과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채권금융기관이나 법정관리인에게 동일인측의 주식처분권이나 의결권행사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경우 당해 회사를 계열제외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셋째, 법률 제55조의3의 위임에 의거하여 출자총액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세무기준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였다.

## 공정거래 자율준수 확산을 위한 유인체계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7. 5(목) 민간주도로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기업들의 자율준수 노력이 조속히 확산·정착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간대표들로 구성된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 위원회」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이 제정·권고된 것은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규범을 지켜나가는 선진경영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라고 높이 평가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기업

인 및 관계임직원,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사업자단체 등을 매년 선정, 공정거래협회가 포상대상 후보자를 추천하면 공정위가 최종 선발하여 창립기념일에 표창할 예정이다.

또한 동 규범의 도입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개별 기업의 선택에 따른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채택·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법 위반행위 발생시 제재수준을 경감해 줄 방침이다.

인센티브는 기업의 자율준수 노력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부여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준수 노력을 극대화할 방침이나, 다만, 자율준수관리자가 위

반행위에 개입된 경우, 위반행위임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위반을 한 경우, 위반행위가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이전에 발생한 경우 등은 제재수준 경감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재수준 경감조치는 해당기업의 신청에 의해 부여되며, 자율준수 노력이 명백히 입증될 수 있도록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게만 부여함으로써 악용사례를 방지할 방침이다.

## 공정위의 하반기 공정거래정책 추진방향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 7. 11. 제4차 경쟁정책자문위원회에서 『2001년 하반기 공정거래정책 추진방향』을 보고하였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 국민생활과 밀접한 6개 분야에 포괄적 시장개선대책을 추진한 결과 교복 제조·유통업체의 가격담합을 시정, 공동구매를 활성화하여 교복값 인하를 유도하였고, 신용카드 관련 15개 업체에 대한 제재를 통해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였으며, 신문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행위기준을 고시, 13개 신문·방송사의 부당내부거래를 확인·시정하였고, 하도급거래의 서면직권조사 결과, 금년 들어 기업 구매카드 등 현금성 결제실적이 급증하였다.

또한 소비자신문고 개설, 소비자피해구제 일괄

처리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대규모 내부거래의 공시제도를 10대에서 30 대그룹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 구조개혁을 위한 시책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2001년 하반기 공정거래정책과 관련하여 공정위는 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이 이완되지 않도록 포장이사, 택배, 다단계 판매, 이동통신, 신용카드 등 15개 업종을 정비하는 한편, 전자거래분야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을 제정하고, 사금융업의 중요정보 고시의무 이행 및 불공정약관을 조사·시정하는 등 소비자피해 예방장치의 강화와 취약분야의 집중점검 그리고 중소·하도급업체의 공정거래질서를 위하여 거래관행 및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및기준지정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 고시를 개정하여 2001. 7. 5(목)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해 외형상 상호합의의 형태로 각종 판촉비용을

전가하고 협찬금 제공 등을 사실상 강요하는 탈법적 행위가 빈발하고 있으나, 현행 고시에 의해서는 이들의 탈법적 행위에 대한 대처가 어려우며, 대규모소매점업자가 구매력을 이용하여 납품업자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판촉비용

및 납품상품의 판매촉진에 직접 기여하지 않는 비용 등을 부담시키는 행위 방지의 필요성과 현행 고시가 적용대상을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소매점으로 하고 있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대규모소매점의 경우 동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 고시를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동 고시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고시 적용 대상인 대규모소매점을 매장면적 3천㎡이상

인 점포로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소비자의 일상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대규모소매점을 모두 적용 대상으로 하고, 둘째, 대규모소매점업자의 구매력을 이용한 각종 탈법적 강요성 행위를 구매력 남용행위인 강요성 행위로 규정하며, 셋째, 점포 임차인의 정의를 고시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문구를 정리하는 등 현행 고시의 정의규정을 대폭 수정하고 판촉사원의 정의는 관련규정의 개정에 따라 삭제하기로 하였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정위는 최근 신용카드 사용 보편화로 할부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에 대해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2001. 7. 10(화) 동법 개정(안)에 대한 소비자단체, 관련사업자단체 및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에서 논의된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소비자가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고, 청약철회기간의 기산점을 다양화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철회권 배제사항을 구체화, 둘째, 간접할부계약의 경우 할부계약이 무효, 불성립된 경우에는 신용제공자가 기 지급한 할부금까지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소비자의 주의의무규정을 삭제하는 등 소비자의 항변권을 확대, 셋째, 할부판매자가 허위·과장 및 기만을 통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할부거래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 할부판매자가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함

으로써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 등 소비자피해를 초래하는 할부판매자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새로이 규정, 넷째, 할부판매자의 금지행위, 할부거래의 표시, 할부계약이 서면주의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및 양벌조항을 신설하고 과태료조항을 보완함으로써 소비자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도모, 다섯째, 할부대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을 1년의 단기로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할부거래의 불확정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을 방지, 여섯째, 할부계약서상에 소비자의 항변권과 그 행사방법, 할부판매자·소비자·신용제공자의 상호,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직접 할부계약시 매월 변제일을 새로이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규정, 일곱째, 소비자가 기한외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일시에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규정, 여덟째, 기타, 할부거래법 전체적으로 매도인을 “할부판매자”로, 매수인을 “소비자”로 법률용어를 변경함으로써 할부거래법이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것 등이다.

## 은행의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 시행 조속히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 6. 27. 은행연합회에서 심사 청구한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에 대해 심사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금년 9월중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이는 표준약관과 관련하여 그간 쟁점이 되어 왔던 전자금융거래 사고발생시 손실부담 및 면책조항과 관련한 책임배분문제에 대해 은행측에서 공정위의 의견에 따라 표준약관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쟁점이 상당부분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전자금융거래의 사고책임과 관련된 표준약관은 전자금융거래시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은 위·변조, 해킹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전자금융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있어서 개인고객차원에서 사고방지비용을 부담하는 것보다는 시스템 제공자인 은행이 부담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서 심사 청구한 표준약관(안)의 주요 내용은 ① 고객의 주의의무 명시, ② 천재지변,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통신장애로 거래가 성립되지 않거나 지연된 경우에도 은행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거래가 처리되지 않은 사실 및 지연사유를 통지, ③ 은행의 귀책사유로 인한 거래 불성립 또는 지연의 경우 원금에 더하여 정기에금이율의 경과이자 보상기준 근거 마련, ④ 은행은 전자금융거래 입·출금 기록을 5년간 유지·보존하여야 하고, 고객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공의무 명시, ⑤ 은행의 전자금융거래로 알게된 정보의 누출 금지의무 및 은행의 관리 소홀로 인한 개인정보 누출시 책임규정 명시, ⑥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이 변경될 경우 영업점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에 게시하는 것 외에 일간신문에 공고토록 하는 등 고지의무 강화, ⑦ 피해구제 신청 대상기관 확대 등이다.

## 2001년 6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 6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변동됨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의거하여 지난 6월 1일자로 변동 내용을 당해 회사와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으로 새로 편입된 회사는 신궤채무보증금지와 상호출자금지 등 각종 공정거

래법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

2001년 6월중 30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는 9개사가 신규편입되고, 1개사가 계열제외되어 2001년 7월 2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 수는 2001년 6월 1일의 639개사에서 647개사로 증가하였다.

◆ 2001년 6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개요 ◆

(단위 : 개사)

구 분	2001. 6. 1.	편 입				제 외						증감	2001. 6. 1
		회사 설립	주식 취득	기타	계	합병	매각	청산	친족 분리	기타	계		
전 체	639	8	1	-	9	-	-	-	-	1	1	8	647
1~4대	199	4	1	-	5	-	-	-	-	-	-	5	204
5~30대	440	4	-	-	4	-	-	-	-	1	1	3	443

◆ 2001년 6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내용 ◆

◎ 편입 : 9개사(회사설립 8, 주식취득 1)

◎ 제외 : 1개사(법인해산 1)

기업 집단	편 입			제 외			증감
	회 사 명	업 종 명	사 유	회 사 명	업 종 명	사 유	
삼 성	한국도와(주)	반도체제조 기계장비제조	주식취득	-	-	-	1
현 대	(주)현대 시트콤	2세기 이동통신 응용시스템개발	회사설립	-	-	-	1
현 대	(주)현대디스플레이 테크놀러지	LCD제조 및 판매	회사설립	-	-	-	1
엘 지	(주)데이콤 크로싱	국제회선임대	회사설립	-	-	-	1
	(주)한국고객 서비스센터	텔레마케팅대행	회사설립				
동 부	동부에프아이 에스(주)	정보기기 제조 및 판매	회사설립	-	-	-	2
동 양	(주)코로포	소프트웨어개발	회사설립	-	-	-	1
코오롱	(주)에이브이 로직스	정보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	회사설립	-	-	-	1
현 대 백화점	(주)현대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회사설립	-	-	-	1
동 국 제강	-	-	-	부산제철부두 운영(주)	항만하역업	법인해산	△1
계	9			1			8